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정준화

I. 대상범죄

1. 증권·금융범죄의 의의

가. 개념

■ 금융범죄의 개념¹⁾

- 금융기관(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되어 금융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비폭력적 범죄
- 증권범죄, 보험범죄, 은행권·비은행권범죄 등이 포함됨
 -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과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음
 - 보험범죄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와 그 범법행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기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즉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협의의 보험범죄), 보험료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보험사기)라고 정의됨
 - 은행·비은행권범죄는 은행·비은행분야의 임직원 또는 이들 은행·비은행이 주체가 되거나 공모 또는 가담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나 은행·비은행분야에 종사하지

1) 최인섭 외 4인,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8~69, 354, 517, 613면

않는 자가 금융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됨

■ 증권범죄의 개념²⁾

- 자본시장³⁾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의 범죄행위
- 협의, 광의, 최광의의 증권범죄
 - **협의의 증권범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
 - **광의의 증권범죄** : 협의의 증권범죄 + 자본시장법 소정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각종 공시 위반 행위, 일임매매제한 위반, 임의매매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수적 위반행위
 - ※ **최광의의 증권범위** : 광의의 증권범죄 + 상법상 주금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분식회계, 형법상 배임수재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로 자본시장법 이외에서 규율하는 범죄
- 증권범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의 재산’과 초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의 기능, 공정성’으로 보고 있으므로,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의 기능과 이에 대한 신뢰 또는 투자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정의⁴⁾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로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2) 사법연수원, 「경제범죄론」(사법연수원, 2011), 161면

3) 자본시장의 큰 줄기는 역시 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본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두성사, 2010), 3~4면

4) 대법원도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이라고 하여 증권범죄가 정보불평등을 통한 투자자들의 재산을 침해 또는 위태화하고 증권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음

- 증권범죄는 과급효과가 커서, 증권시장의 위축 내지 마비를 초래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다른 금융범죄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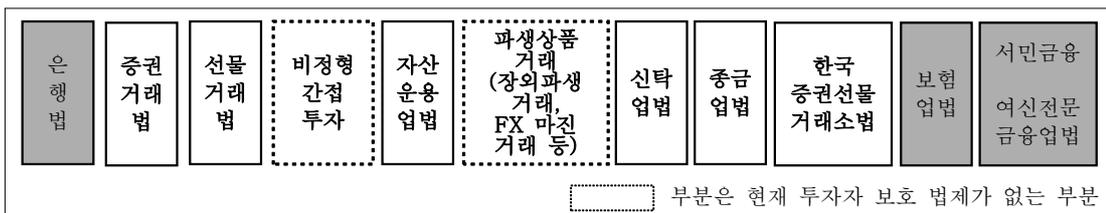
2.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서의 증권·금융범죄의 범위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서의 증권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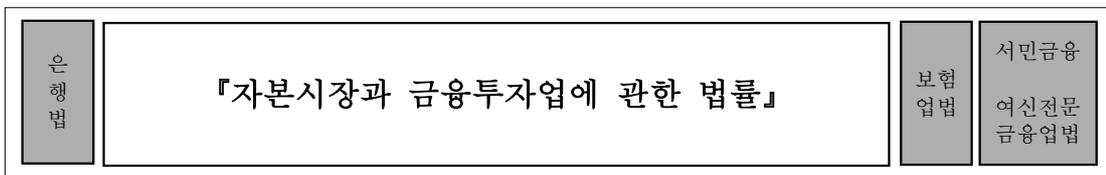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2009. 2. 4. 시행)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서 일명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불림

<구 금융법 체계>



<통합 후 금융법 체계>



-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규율체제 도입, ②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③ 금융투자회

사의 업무범위 확대, ④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들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의 보호법익**

-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시장 발전(공정성), 투자자 보호(신뢰성), 금융투자업 육성(효율성)의 세 가지 요소에 주목⁵⁾
- 증권범죄는 1차적으로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손실이 곧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보호법익은 ‘투자자 재산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보호’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시장의 중요성⁶⁾**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과 질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음
- 자본시장의 규모는 2008년말 기준 약 1,500조원으로 1990년말 114조원에 비하여 13배 정도 확대되었음.
- 자본시장 중 주식시장은 주가변동에 따라 시가총액이 확대 및 수축을 반복하여 2008년말 기준 623조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는 52%에 이룸

5) 김건식, 정순섭, 전계서, 12~13면

6) 윤승한, 「자본시장법강의」(삼일인포마인, 2008), 30~32면

- 그러나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보건대,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은 아직 낮은 상태로 향후 그 비율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시가총액(A)	4,831	93,911	27,109	17,929	8,783	4,250	2,279
GDP(B)	9,287	142,807	49,118	26,722	36,465	4,016	1,818
A/B(%)	52.0	65.8	55.2	67.1	24.1	105.8	125.4

(단위 : 억달러)

■ 자본시장법상 주요 범죄

- 자본시장법은 그 중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행위가 전체 구공판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사건현황(2003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행위가 전체 통보사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음⁷⁾
 -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상 ①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25조), ②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62조), ③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④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70조)의 4가지 청구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어, 공시의무위반,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에 있어서 민, 형사상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임을 알 수 있음

7) 이성호, “증권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4~35면

○ 불공정거래

- 시장의 가격형성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 금지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일반의 신뢰 확보
- 증권범죄 중 반사회성 및 반윤리성이 가장 강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음

○ 공시위반

-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⁸⁾에서의 정보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허위 공시도 넓은 의미의 공시위반에 포함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서의 금융범죄

■ 보험범죄의 경우

-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협의의 보험범죄), 보험료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보험사기)로 정의되고 있음
- 보험범죄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범주를 설정한 것임
- 보험범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다른 범죄(살인, 강도, 사기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상해 등)이므로, 그러한 경우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혼란의 여지가 적다고 할 것임

■ 은행·비은행권 범죄의 경우

- 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금융실명제위반, 도난·피탈 등이 주요 범

8) 발행시장은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함. 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널리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발행된 지 다소 시간이 경과한 증권이라도 대량으로 투자자에게 분산매매되는 거래는 발행시장의 거래에 속함

죄로 나타나고 있음⁹⁾

-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유용의 경우 이미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소비자인 법관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고, 혼란의 여지가 적으므로, 이를 다시 금융범죄의 양형기준 대상으로 삼을 필요 없음
- 금품수수 등의 경우는 양형기준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난·피탈의 경우는 그것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강도, 절도 등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통하여 해결함이 상당함
- 금융실명제위반 및 기타 범죄의 경우 은행법 등의 행정적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임. 이러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법 등의 규제 법률 위반죄의 경우 행정법규적인 측면이 강하며, 관련된 유의미한 사례를 발굴하기도 힘든 점, 국민적 관심 역시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 검토의견

- 금융범죄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성격상 상이한 범죄군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광범위한 범죄군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범죄를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의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은행·비은행권 범죄의 경우 역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범죄 외에는 양형기준 설정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9)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은행·비은행 금융사고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 중 횡령 및 유용사고가 62.4%,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가 16.9%, 금융실명제 위반이 5.9%, 도난·피탈이 4.3%, 기타가 10.6%를 차지함

- 따라서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수·증재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3. 현행법상 증권·금융범죄 관련 법률 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4조 제1항 내지 제3항	(i)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
시세조종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6조 제1항 내지 제4항	(ii) 징역 3년 이상(이익, 회피 손실액 5억원~50억원)
부정거래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8조	(iii) 무기, 징역 5년 이상(이익, 회피 손실액 50억원 이상)
증권신고서 미제출 공모,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제445조 제20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제444조 제18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5조 제1항, 제2항	(i)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ii) 징역 5년 이상(수수액 3,000만~5,000만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5조 제3항	(iii) 징역 7년 이상(수수액 5,000만~1억원) (iv) 무기, 징역 10년 이상(수수액 1억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6조 제1항, 제2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	제7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사금융알선	제8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 이하
저축관련 부당행위	제9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분식회계)	제20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제20조 제2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등	제20조 제3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회사관계자의 외부감사 방해	제20조 제4항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대상범죄 선정 원칙

- 특정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적 관심, 범죄 발생빈도, 징역형 선고비율,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
- 법정형 또는 범죄발생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이 곤란하므로 대상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

나. 구체적 검토

▣ 회사범죄(상법위반 범죄) : 제외

- 회사의 이윤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위법행위. 회사범죄의 주체는 회사 그 자체(상법 등 법률에서 회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경영자(자기의 지위나 경영활동)

등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 종업원(경영진을 제외한 종업원이 자신의 지위나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임

- 회사범죄 또는 회사형법의 보호법익은 ‘회사재산의 보호’ 또는 ‘회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보호’¹⁰⁾라고 할 수 있음
 - ‘회사재산의 보호’는 주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의 보충적 규정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상법 제625조), 부실보고죄(상법 제626조), 부실문서행사죄(상법 제627조)를 들 수 있음
 - ‘회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보호’의 대표적인 예로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독직죄(상법 제625조), 회사의 권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상법 제631조), 이익공여죄(상법 제634조의2)를 들 수 있음
- 회사범죄에 대한 형사제재규정은 매우 복잡·다양하고, 상법, 형법 및 특경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등에 산재하고 있음
 - 상법 : 회사 임직원의 특별배임죄,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부실보고죄, 부실문서행사죄, 가장납입죄, 초과발행죄, 발기인 등의 독직죄,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납입책임면탈죄, 주식의 취득 제한 등 위반죄
 - 형법 및 특경법 : 횡령, 배임, 사기
 - 자본시장법 : 유가증권 발행과 매매, 기타 유가증권의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유가증권 모집·매출·신주발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된 유가증권 신청서·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 및 공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10) 이정민, “회사형법의 합리화와 형법정책의 방향”(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9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분식회계 관련 범죄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의 허위보고
- **횡령, 배임, 사기범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사기범죄군으로 분류되었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시행 중임**
- **상법위반죄는 구공판 건수(비율)가 매우 적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2009년 전국 1심 법원 구공판사건은 11건(그 중 징역형 선고 6건)에 불과
 - 2010년 전국 1심 법원 구공판사건은 22건(그 중 징역형 선고 11건)에 불과
- **회사범죄의 구공판 건수(비율), 복잡성 및 특수성¹¹⁾ 등을 고려할 때, 회사범죄는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 굳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회사범죄(또는 상법위반범죄)라는 별도의 범죄군에서 양형기준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 2011. 10. 24. 개최된 제44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주주총회 부실보고, 가장납입 등 상법위반범죄를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 때 추가 논의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상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초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일반 배임수재, 알선수재, 알선수뢰 범죄 : 제외**

- **배임수재는 범행 주체에 따라 별개의 법률로써 독자적인 구성요건**

11) 회사범죄의 특수성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방법 혼재, 비난가능성 유무에 대한 논란, 법률 규정 불명확, 넓은 기소재량 등을 들 수 있음. 사법연수원, 전게서, 248면

-
- 및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상 배임수재는 '횡령과 배임의 죄' 장에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배임범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인회계사법상 배임수재는 공인회계사의 수재(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알선수재**는 알선의 대상이 된 사무 또는 직무, 범행 주체에 따라 별개의 법률로써 독자적인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의 관·검사와 교제 명목 금품 수수(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알선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장에 규정되어 있는 뇌물범죄로서 범행주체가 공무원이므로 알선수재와 구별됨
 - **특경법**에서는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알선수재를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 일반 배임수재, 공인회계법상 배임수재, 특가법·변호사법·사법상 알선수재와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상이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수재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도 별도로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일반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상 배임수재, 특가법,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및 알선수죄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

-
- ▶ 2011. 10. 24. 개최된 제44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기타 수증 재범죄가 금융·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수증재범죄군의 별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논의시기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누어졌으며, 일단 5차 공청회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일반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상 배임수재, 특가법, 변호사법상 알선수재 및 알선수뢰죄를 양형기준 초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 불포함

● 사금융알선

- 사금융알선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으로 한다는 점(아울러 일반 예금자 대중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과 유사함
- 그러나, 사금융알선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 채무보증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금품수수 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 등과는 행위태양이 상이함
- 따라서, 특정법상 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수된 금품의 액수로 분류할 경우 다른 금융범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기가 어려움
- 다만, 사금융알선의 경우에도 알선한 사금융의 액수에 따라 유형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의 액수와 알선한 사금융의 액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판결 분석을 보더라도 알선한 사금융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에서 42억 원에 이르

는 등 다양한 분포를 보임)

- 사금융알선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역시 상정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코트넷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1심에서 '사금융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징역'을 검색어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23건만이 검색되고, 대부분 경합범 형태로 선고되어 독자적인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 저축관련 부당행위

- 저축관련부당행위에 관한 특경법 제9조 제1, 2항은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범죄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다른 금융범죄와는 상이함
- 특경법 제9조 제3항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주체로 하고 있으나, 위 범죄는 저축을 하는 자에게 이자 등 이외의 금품 등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타 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함
- 제3항 범죄의 경우 실제로 동 조항을 근거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에도 의문이 생김(코트넷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1심에서 '저축관련부당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을 검색어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17건만이 검색되고, 대부분 경합범 형태로 선고되어 독자적인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포함 여부에 의문이 있음)

- ▶ 2011. 10. 24. 개최된 제44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특경법상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죄를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 때 추가 논의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특경법상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죄를 양형기준 초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

▣ 범위 설정 방향

- 양형위원회에서 범죄별 행위속성과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별개의 범죄군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었거나(정부보조금사기, 부동산범죄, 광고사기, 보건범죄), 향후 양형기준 설정 예정인 범죄(조세범죄, 관세범죄, 부정경쟁행위, 부정수표범죄, 지적재산권침해범죄, 산업스파이)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개념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보장에 매우 중요한 증권범죄에 중점을 둘 필요 있음 → 자본시장 및 시장참가자와 관련된 증권·금융범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① 양형위원회가 분류한 **별도의 독립된 범죄군**(뇌물, 횡령·배임, 사기, 조세, 지식재산권, 변호사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식품·보건, 환경범죄 등)으로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않았고**, ②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으며**(국민적 관심 높은 범죄), ③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 범죄**(발생빈도 또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은 범죄 제외)가 대상이 될 것임
- 따라서
 - 자본시장 및 그 참가자들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및 참가자들의 공공성·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여
 - 범죄별 행위 속성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범주(category)로 구분한 후,
 - 각 범주 내에서 국민적 관심¹²⁾,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고, 양형

기준 설정에 적합한 대상범죄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함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

- ①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침해 범죄**
- ②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 범죄**

■ **구체적 설정 범위**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하는 증권범죄¹³⁾ 및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금융범죄(특정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 행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침해범죄는,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규제의 양대 지주인 ‘불공정거래규제’와 ‘공시규제’¹⁴⁾를 구분하여,
 -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 공시위반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수재, 알선수재, 증재로 구분하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증재

12) IMF사태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보호,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론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2011. 8. 23.자 세계일보 오피니언란의 도이치뱅크의 2010. 11. 11. 옵션쇼크사건에 관한 오피니언 등 참조

1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증권범죄에 파생상품에 관한 범죄가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권범죄는 파생상품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범죄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파생상품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는 의미로 증권범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함

14) 김건식, 정순섭, 전게서, 301면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7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78조,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특경법 제5조, 제6조, 제7조를 대상범죄로 삼는 것이 타당

II. 범죄유형 분류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 ▣ 증권·금융범죄는 각 법률에 따라 보호법익이 상이함
 - 자본시장법위반범죄의 보호법익은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또는 투자자 보호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제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또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임
- ▣ 증권·금융범죄의 보호법익, 특성,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의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

가. 미국 연방

-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 미국은 내부자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기금지규정이라 할 수 있는 1934년법 제10조 (b)항 및 1960년대 이후 SEC(연방 증권거래위원회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칙 제10b-5조를 근거로 내부자거래를 보통법(판례법)상의 사기와는 다른 증권거래법상의 사기로 보는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

해 규제하고 있음¹⁵⁾

● 내부자거래 규제 법규

-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시세조종행위 기타 사기적 행위 금지)
- SEC규칙 제10b-5조
- 증권거래법 제16조 b항
- 1984년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 1988년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규제법(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 시세조종행위(Manipulation)

-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시세의 고점에서 보유주식을 내다파는 유형으로 '펌프 앤드 덤프 (pump and dump)' 케이스라고 불리고, 둘째는 고전적 형태의 시세조종 행위로서 가장매매, 통정주문, 매수호가 높이기 등이 있음

● 시세조종의 규제법규

- 1934년법 제9조(a)
- 1934년법 제10조(b)
- SEC규칙 제10b-5조

- 100만 달러 이하 벌금(법인의 경우 200만 달러)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가능

☞ 민사적 제재로서, 유지소송(Injunction Actions) 및 이익 반환 (Disgorgement), 민사제재금(civil fine, civil money penalty) 제도

15) 현재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규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내부자거래 규제 찬성론과 규제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규제이론도 특별사실이론(special facts doctrine), 정보소유이론 (possession of information), 충실의무이론(fiduciary duty theory), 정보유용이론 (misappropriation theory) 등으로 나뉘어져 있음

나. 영국

▣ 내부자거래 : Criminal Justice Act 1993의 Part V에서 규율

- 약식절차에 회부된 경우 :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가 가능
- 정식기소된 경우 :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가 가능

▣ 오인유발에 관한 죄(misleading statements and practices, 시세조종 행위)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¹⁶⁾에서 규율

- 약식절차에 회부된 경우 :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가 가능
- 정식기소된 경우 :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가 가능

▣ 기타 형사처벌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자거래 및 오인유발에 관한 죄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규정을 둠
 - 공인이나 면제를 받음이 없이 규율되는 행위(regulated activity)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공인되거나 면제를 받았다고 그릇되게 주장하는 행위, 금융산업원 또는 국무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 법령에 규정된 제한에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 장기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보험회사의 장으로서 금융산업원에 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한 총회를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특

16) 기존 증권시장의 규제를 담당해 왔던 금융산업법(the Financial Service Act 1986), 보험시장의 규제를 담당해 왔던 보험회사법(the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및 예금시장의 규율을 담당했던 은행법(the Banking Act 1987) 등 금융 관련 법률이 통합된 단일 금융감독법

별재판소에 증거제출을 거부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파기하는 행위

다. 독일

- ▣ 내부자거래 금지(Verbot der Insidergeschäften) :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delsgesetz) 제38조
 -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형사적 제재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민사제재금이나 이익 반환 등의 민사적 제재나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시세조종행위(Manipulation) :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delsgesetz) 제38조
 - 시세조종행위가 있었으나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 질서위반범으로 최고 150만 유로의 과태료 부과
 - 시세조종행위가 증권 시세에 실제 영향을 준 경우 : 5년 이하의 자유형
 - 시세조종행위가 형법 제264조a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형사적 제재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민사제재금이나 이익 반환 등의 민사적 제재나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라. 일본

- ▣ 시세조종행위 : 증권거래법 제159조, 제19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가중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 내부자거래 : 증권거래법 제166조, 제19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마. 우리나라 증권범죄에 대한 형사 규제의 특징

▣ 불공정거래의 엄벌

- 미국, 독일, 일본은 불공정거래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5년 또는 10년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
- 미국과 같은 민사제재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사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행정제재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적어 사실상 현재로 실효성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⁷⁾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른 법정형 차등화

- 미국, 독일, 일본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등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수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차등하여 가중처벌함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가. 선고형 분포

▣ 중국 내역

단위 : 명, %

세부죄명		1심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수	2	30	32
	비율	6.3	93.8	100.0
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수	2	0	2
	비율	100.0	0.0	100.0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수	20	129	149
	비율	13.4	86.6	100.0

17) 이영한,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의 현황과 문제점”(재판실무자료, 2003), 59면

단위 : 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	수	37	51	88
	비율	42.0	58.0	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수	53	98	151
	비율	35.1	64.9	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재등)	수	1	29	30
	비율	3.3	96.7	100.0
전체	수	115	337	452
	비율	25.4	74.6	100.0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죄의 실행 선고비율은 13.1%,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86.9%인 것으로 나타남
- 특정법상 수재죄의 실행 선고비율은 42.0%,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58.0%인 것으로 나타남
- 특정법상 알선수재죄의 실행 선고비율은 35.1%,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64.9%인 것으로 나타남
- 특정법상 증재죄의 실행 선고비율은 3.3%,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96.7%인 것으로 나타남

■ 선고 형량 분포

단위 : 명, %

세부죄명		징역형량(월)																		전체	
		2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4	29	30	36	42	48		60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수	0	0	0	4	0	6	10	6	0	0	0	3	0	0	2	1	0	0	0	32
	비율	0.0	0.0	0.0	12.5	0.0	18.8	31.3	18.8	0.0	0.0	0.0	9.4	0.0	0.0	6.3	3.1	0.0	0.0	0.0	100
자본시장법(사기적부정거래)	수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2
	비율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100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수	0	1	0	13	0	19	18	38	0	0	0	18	4	0	32	4	2	0	0	149
	비율	0.0	0.7	0.0	8.7	0.0	12.8	12.1	25.5	0.0	0.0	0.0	12.1	2.7	0.0	21.5	2.7	1.3	0.0	0.0	100

단위 : 명, %

세부죄명		징역형량(월)																		전체	
		2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4	29	30	36	42	48		60
특경법 (수재등)	수	0	2	1	9	0	14	5	11	2	0	1	17	6	1	7	7	3	1	1	88
	비율	0.0	2.3	1.1	10.2	0.0	15.9	5.7	12.5	2.3	0.0	1.1	19.3	6.8	1.1	8.0	8.0	3.4	1.1	1.1	100
특경법 (알선수재)	수	1	3	1	25	0	36	19	39	2	2	1	18	3	0	1	0	0	0	0	151
	비율	0.7	2.0	0.7	16.6	0.0	23.8	12.6	25.8	1.3	1.3	0.7	11.9	2.0	0.0	0.7	0.0	0.0	0.0	0.0	100
특경법 (증재등)	수	0	2	0	9	0	6	5	4	1	0	1	1	1	0	0	0	0	0	0	30
	비율	0.0	6.7	0.0	30.0	0.0	20.0	16.7	13.3	3.3	0.0	3.3	3.3	3.3	0.0	0.0	0.0	0.0	0.0	0.0	100
전체	수																				
	비율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81.4%, 징역 1년 6월이 9.4%, 징역 2년 6월 이상이 9.4%를 차지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59.1%,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이 14.8%, 징역 2년 6월 이상이 24.2%를 차지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경우, 대상 사건이 2건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통계분석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특경법상 수재등죄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44.3%, 징역 1년 초과 징역 2년 이하가 29.58%, 징역 2년 초과 징역 3년 이하가 17.1%, 징역 3년 초과 징역 4년 이하가 4.5%, 징역 4년 초과가 1.1%를 차지

4. 구체적 유형화 방안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 설정방식의 개요

-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있어서 입법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로 구분한 후, 위 3개 범죄 모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① 5억원 미만(징역 10년 이하), 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징역 3년 이상), ③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범행동기가 시세차익을 얻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재판실무에 있어서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고 있음
 - 범행 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예컨대, 일반투자자에 의한 범행, 회사 내부자에 의한 범행, 증권회사 및 그 직원에 의한 범행 등), 증권거래의 단계에 따른 유형 분류(예컨대, 회사의 성립 단계에서의 범행, 유가증권의 발행 단계에서의 범행, 유가증권의 거래 단계에서의 범행 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일반투자자 여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유형분류가 무의미하거나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고, 무엇보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특경법은 ① 5억원 미만, 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③ 50억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양형기준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른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특경법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그보다 낮은 금액인 5억원 미만의 구간을 하나 더 구분하며, 그보다 높은 금액인 50억원 이상의 구간 역시 하나 더 구분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황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분류 참조)
 - 다만,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른 유형분류는 금액만을 기준으
-

로 한 계량화의 문제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개념의 불명확성, 구체적 사안에서의 형량범위 역전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적정한 형량범위의 설정 및 중첩, 다양한 양형인자의 발굴, 별도의 서술식 기준의 추가 등)

▣ 유형의 구분

- 제1유형(1억원 미만)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제5유형(300억원 이상)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4조 제1항 내지 제3항	(i)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
시세조종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6조 제1항 내지 제4항	(ii) 징역 3년 이상(이익, 회피 손실액 5억원~50억원)
부정거래행위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178조	(iii) 무기, 징역 5년 이상(이익, 회피 손실액 50억원 이상)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 설정방식의 개요

- 자본시장 공시의무 불이행 또는 공시위반범죄에 있어서 입법자는,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불이행과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구분한 후, 전자보다 후자에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상의 공시 관련 범죄에 있어서 입법자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정보 위·변조 등으로 구분하되,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유형의 구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 위반)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 제2유형(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20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외감법 제20조 제2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다.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

▣ 설정방식의 개요

- 금융기관 공공성 침해범죄에 있어서 입법자는,
 - 수재범죄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범행 주체인 수재·알선수재
 - 증재범죄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범행 상대방인 배임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범행 대상인 알선수재로 구분한 후, 수재·배임수재·알선수재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각 유형에서 수수액에 따라 세부 유형 분류

▣ 유형의 구분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제6유형(5억원 이상)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5조 제1항, 제2항	(i)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ii) 징역 5년 이상(수수액 3,000만~5,000만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5조 제3항	(iii) 징역 7년 이상(수수액 5,000만~1억원) (iv) 무기, 징역 10년 이상(수수액 1억원 이상)

2.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제4유형(1억원 이상)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6조 제1항, 제2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3.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제4유형(1억원 이상)

※ 적용대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7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5. 권고 형량범위

가. 개요

▣ 권고 형량범위 설정상 고려사항

- 해당 범죄유형의 범죄에서 발현되는 전형적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구분된 유형에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형량을 정하여야 할 것임
- 양형실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별 형량범위에 있어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양형기준 형량범위 참고 필요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죄의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른 법정형은, 횡령·배임, 사기죄의 이익액에 따른 법정형과 동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횡령·배임범죄, 사기범죄의 형량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죄의 수수액에 따른 법정형은, 뇌물수수죄의 수뢰액에 따른 법정형과 동일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는 뇌물공여죄와 법정형이 동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형량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유형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

1)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침해 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단위 : 명,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징역형량(월)							전체
		6	8	10	12	18	30	36	
손실액 50억원 이상	수	0	0	0	0	0	2	1	3
	비율	0.0	0.0	0.0	0.0	0.0	66.7	33.3	100.0
손실액 5억원 ~ 50억원 미만	수	0	0	0	0	2	0	0	2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손실액 5억원 미만	수	4	6	10	6	1	0	0	27
	비율	14.8	22.2	37.0	22.2	3.7	0.0	0.0	100.0
전체	수	4	6	10	6	3	2	1	32
	비율	12.5	18.8	31.3	18.8	9.4	6.3	3.1	100.0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3년이 선고됨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부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형이 96.3%이고, 징역 1년 6월형이 3.7% 선고됨

● 시세조종

단위 : 명,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징역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8	24	30	36	42	
손실액 50억원 이상	수	0	0	0	0	0	0	0	30	1	2	33
	비율	0.0	0.0	0.0	0.0	0.0	0.0	0.0	90.9	3.0	6.1	100.0
손실액 5억원 ~ 50억원 미만	수	0	0	0	0	0	2	2	0	2	0	6
	비율	0.0	0.0	0.0	0.0	0.0	33.3	33.3	0.0	33.3	0.0	100.0
손실액 5억원 미만	수	1	13	19	18	38	16	2	2	1	0	110
	비율	0.9	11.8	17.3	16.4	34.5	14.5	1.8	1.8	0.9	0.0	100.0
전체	수	1	13	19	18	38	18	4	32	4	2	149
	비율	0.7	8.7	12.8	12.1	25.5	12.1	2.7	21.5	2.7	1.3	100.0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2년 6월형이 90.9%, 징역 3년형이 3.0%, 징역 3년 6월형이 6.1% 선고됨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형이 66.7%, 징역 3년형이 33.3% 선고됨
- 이익액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년형 이하가 80.9%, 징역 1년 6월형이 14.5%, 징역 2년형이 1.8%, 징역 2년 6월형이 1.8%, 징역 3년형이 0.97% 선고됨

● 사기적 부정행위

- 통계분석자료 없음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통계분석자료 없음

2)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 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단위 : 명, %

수수 금액		징역 형량(월)															전체	
		4	5	6	8	10	12	14	16	18	24	29	30	36	42	48		60
3천만원 미만	수	2	0	9	11	4	5	1	0	5	1	0	0	0	0	0	1	39
	비율	5.1	0.0	23.1	28.2	10.3	12.8	2.6	0.0	12.8	2.6	0.0	0.0	0.0	0.0	0.0	2.6	1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수	0	0	0	1	0	3	0	0	5	1	0	3	1	0	0	0	14
	비율	0.0	0.0	0.0	7.1	0.0	21.4	0.0	0.0	35.7	7.1	0.0	21.4	7.1	0.0	0.0	0.0	1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수	0	1	0	0	0	0	1	1	3	1	1	2	2	2	0	0	14
	비율	0.0	7.1	0.0	0.0	0.0	0.0	7.1	7.1	21.4	7.1	7.1	14.3	14.3	14.3	0.0	0.0	100
1억원 이상	수	0	0	0	2	1	3	0	0	4	3	0	2	4	1	1	0	21
	비율	0.0	0.0	0.0	9.5	4.8	14.3	0.0	0.0	19.0	14.3	0.0	9.5	19.0	4.8	4.8	0.0	100
전체	수	2	1	9	14	5	11	2	1	17	6	1	7	7	3	1	1	88
	비율	2.3	1.1	10.2	15.9	5.7	12.5	2.3	1.1	19.3	6.8	1.1	8.0	8.0	3.4	1.1	1.1	100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단위 : 명, %

증재 금액		징역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4	16	18	24		
3천만원 미만	수	1	5	3	2	1	0	0	0	1	13	
	비율	7.7	38.5	23.1	15.4	7.7	0.0	0.0	0.0	7.7	100.0	
3천 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수	0	0	0	0	0	0	0	1	0	1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5천 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수	1	0	0	2	2	1	1	0	0	7	
	비율	14.3	0.0	0.0	28.6	28.6	14.3	14.3	0.0	0.0	100.0	
1억 원 이상	수	0	4	1	1	1	0	0	0	0	7	
	비율	0.0	57.1	14.3	14.3	14.3	0.0	0.0	0.0	0.0	100.0	
금액 미상	수	0	0	2	0	0	0	0	0	0	2	

단위 : 명, %

증재 금액		징역 형량(월)									전체
		4	6	8	10	12	14	16	18	24	
	비율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2	9	6	5	4	1	1	1	1	30
	비율	6.7	30.0	20.0	16.7	13.3	3.3	3.3	3.3	3.3	100.0

다. 형량범위 설정의 접근방식

1) 개요

- 유형에 따른 선고형 분포의 통계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별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되, 양형기초자료의 대상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의 경우는 경험적 방식에 따른 형량범위 설정이 곤란하고, 기존의 양형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에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정형이 동일한 횡령·배임범죄와 뇌물범죄의 형량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2)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 횡령·배임범죄, 사기범죄와 동일한 형량범위 설정 여부
 - 횡령·배임, 사기범죄와 불공정거래죄의 법정형 비교

구분	법정형(적용법률)		
	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3년 이상 (특경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경법)
불공정거래행위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3년 이상 (자본시장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본시장법)

- 논의의 필요성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횡령·배임범죄 또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사용된 유형분류 및 그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가능함
- 위와 같은 견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정형이 5억, 5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횡령·배임범죄 및 사기범죄 역시 그 법정형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억, 5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고 있음

- 상정 가능한 견해

- 제1설 : 횡령·배임범죄의 형량범위를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
- 제2설 :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

- 검토 의견

- 2008년 양형자료조사결과와 위 횡령·배임 통계와 2011년 양형자료 조사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양형통계를 비교해 보면,
 - ① 징역 1년 6월 이하 형 선고비율이 특경법상 횡령·배임죄는 42.4%, 불공정거래죄는 74.5%, ② 징역 1년 6월 초과 3년 이하 형 선고비율이 특경법상 횡령·배임죄는 45.5%, 불공정거래죄는 23.3%, ③ 징역 3년 초과 형 선고비율이 특경법상 횡령·배임범죄는 12.1%, 불공정거래죄는 1.6%로 나타남
 - 정확한 비교 평가는 어렵지만, 횡령·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평균 형량이 33.7%인 반면, 불공정거래죄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에 관한 사례 8건 중 75%(6건)가 24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에 관한 사례 36건 중 88.8%(32건)가 30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불공정거래죄의 선고형량은 대체로 사기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횡령·배임범죄의 통계적 형량분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위원회에서 증권·금융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종래의 양형실무를 참고하되, 규범적 관점에서 좀 더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사기범죄의 형량범위가 적정할 것임
 - ☞ 종래 증권범죄의 양형이 관대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권고 형량범위의 규범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음
- 다만, 규범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일반사기의 형량범위안, ②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안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법정형, 입법자의 의사,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법적 성격, 작량감경사유와의 관계, 양형실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임

의견	논거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다수가 가담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므로 조직적 사기와 속성이 유사하고, 투자자 개인들의 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중대한 사회법적 침해 범죄임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는 사기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이미 내포되어 있음 ○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높아 소액의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제재의 정도가 현재보다 높아져야 함 ○ 단순한 재산범죄와 달리 금융시장질서 교란적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사기보다는 좀 더 형량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경우 다수의 공익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를 택하되, 불특정 다수 피해자라는 전형적

	속성이 이종으로 평가되면 안 되므로 그러한 양형인자는 가중인자에서 제외하여 양형인자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타당
일반사기 형량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영역 형량범위에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며, 양형기준이 입법을 대체할 수 없음 ○ 조직적 사기죄의 형량범위를 차용할 경우, 종래의 양형실무를 전혀 포섭할 수 없게 되므로 양형실무와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일반사기 정도의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바람직 ○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증권범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금융시스템 개선이나 감독기능 보완 등의 방법도 중요함 ○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는 사기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아서 일반사기보다 중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님 ○ 조직적·전문적 시세조종만을 상정해서 형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사기 형량범위를 택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영역으로, 단순가담자는 감경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를 채택할 경우,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이 법정형 하한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량감경사유가 있어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작량감경한 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문제 발생

[참고] 횡령·배임,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 비교

유형	횡령·배임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1	1억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2	1억 이상, 5억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5억 이상, 50억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2년-5년	4년-7년	6년-9년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3년-6년	5년-8년	6년-9년	4년-7년	6년-9년	8년-11년
5	300억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6년-10년	8년-13년	11년 이상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 채택시의 문제점]

■ 집행유예 선고 가부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와 불일치

- 법정형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이득액 5억원 이상 : 징역 3년 이상
- 법정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별히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없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한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적 선고형량과의 과도한 괴리 발생

-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40~41쪽 참조)에 따르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건 8건 중 6건(75%)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사건 36건 중 32건(88.8%)에서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 종래의 양형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향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양형실무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는 없음
- 만약, 조직적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차용할 경우, 종래의 양형실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상향조정되는데, 이는 양형실무와 너무나 괴리되어 양형기준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큼
 -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에 따른 경험적 선고 형량(3년 6월을 초과하는 선고형은 없

음)을 기본영역(6년~9년)은 물론 감경영역(4년~7년)도 전혀 포섭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함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에 따른 경험적 선고 형량(3년을 초과하는 선고형은 없음)을 기본영역(4년~7년)이 전혀 포섭할 수 없게 되어 역시 부당함

■ 결론 : 일반사기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함이 타당

3)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의 대상범죄인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외감법 제20조 제1, 2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의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추출·조사¹⁸⁾해 본 결과, 개별 범죄별 선고형량분포는 다음 표와 같음

적용법조	양형(집행유예 여부)			
	6월	8월 ~ 1년	1년 6월	2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0	3(2건)	1	0
제444조 제13호	3(3)	15(11)	2	0
제444조 제14호	0	0	0	0
제444조 제15호	0	0	0	0
제444조 제18호	0	0	0	0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 2항	3(3)	5(4)	1(1)	1(1)

- 단일범으로 구공판된 사건 수가 별로 많지 않아 통계적 형량분포

18) 2007. 1. 1.~2011. 9. 징역형이 선고된 1심 단일범 사건을 대상으로 함. 자본시장법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위반죄까지 포함

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법정형을 고려한 유형분류의 취지에 맞게 규범적 접근방법을 혼용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4)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 범죄

▣ 뇌물범죄와 동일한 형량범위 설정 여부

● 뇌물범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죄의 법정형 비교

구성요건	법정형	
	특경법 금융기관 임직원 수증재	뇌물
수재 및 수뢰	①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② 징역 5년 이상 (수수액 3,000만원~5,000만원) ③ 징역 7년 이상 (수수액 5,000만원~1억원) ④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수수액 1억원 이상)	①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알선수뢰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② 징역 5년 이상 (수뢰액 3,000만원~5,000만원) ③ 징역 7년 이상 (수뢰액 5,000만원~1억원) ④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수뢰액 1억원 이상)
제3자제공		
알선수재 및 알선수뢰		
증재 및 증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제3자교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범죄는 뇌물수수 및 증여죄와 구성요건 규정방식 및 법정형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뇌물범죄 형량기준과 동일한 형량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범죄 법정형에 대한 기존 논의

-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이 있어 왔음(금융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는 나라를 일본을 제외하고 없다고 함)
- 위 형벌법규는 1983년경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이철희·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 조흥은행 사건 등 대형 금융관련 범죄가 발생하자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히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1983. 12. 31. 신설되었음), 법정형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었음

-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법정형과 관련한 위헌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그 법정형이 공무원의 뇌물범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98헌바26, 2004헌바4 등)
- 다만, 현재는 2006. 4. 27. 2006헌가5 결정에서 본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던 특가법상 뇌물범죄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에도 특경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채의 법정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검토의견

-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조항의 입법취지 및 법문상 공무원 뇌물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양형에 있어 공무원 뇌물범죄와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음
- 특히 최근 금감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 일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에 비추어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실무보다 다소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을 띠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힐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및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자 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와 동일한 형량범위 설정 여부

- 뇌물범죄 양형기준에는 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가 없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죄는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차용할 수 없음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죄의 징역형 법정형이 동일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의 형량범위표를 차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죄의 금품수수액별 징역형량 분포

금액		징역형량(월)													전체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0	
3천만 원 미만	수	1	3	1	19	18	6	7	0	0	1	0	0	0	56
	비율	1.8	5.4	1.8	33.9	32.1	10.7	12.5	0.0	0.0	1.8	0.0	0.0	0.0	100.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수	0	0	0	2	8	5	9	0	0	0	1	0	0	25
	비율	0.0	0.0	0.0	8.0	32.0	20.0	36.0	0.0	0.0	0.0	4.0	0.0	0.0	100.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0	0	0	3	4	1	10	0	0	0	2	0	0	20
	비율	0.0	0.0	0.0	15.0	20.0	5.0	50.0	0.0	0.0	0.0	10.0	0.0	0.0	100.0
1억 원 이상	수	0	0	0	0	3	6	12	2	2	0	15	3	1	44
	비율	0.0	0.0	0.0	0.0	6.8	13.6	27.3	4.5	4.5	0.0	34.1	6.8	2.3	100.0

금액		징역형량(월)												전체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0
전체	수	1	3	1	24	33	18	38	2	2	1	18	3	1	145
	비율	0.7	2.1	0.7	16.6	22.8	12.4	26.2	1.4	1.4	0.7	12.4	2.1	0.7	100.0

-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가 83.9%를 차지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 60%를 차지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 10%를 차지
- 1억원 이상의 경우,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가 2.3%를 차지

□ 검토의견

- 금품수수액별 징역형량분포 분석결과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 및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의 형량범위표를 그대로 원용해도 무방하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및 1억원 이상은 형량범위가 실무에 비해 높음
- 그러나 뇌물범죄에서도 뇌물수수액이 고액인 경우,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금품수수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종래의 양형실무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므로 뇌물공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형량범위의 설정

- 위에서 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형 및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2)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2년6월

3)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III. 양형인자의 결정

1. 통계분석결과

- 별지 통계분석결과 참조

2. 양형인자 추출

가.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기타 전문직, 통정거래, 고가매수)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여부)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비난동기, 진지한 반성,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 특별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소극 가담, 비난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나.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소극 가담,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양형인자 정리

가.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대상 기업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거나 대상 기업을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규제 또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
-

- 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회피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 ▶ 비난 동기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규제 또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비난 동기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양형인자의 정의]

-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적극적 요구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 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양형인자의 정의]

-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양형인자의 정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수재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V. 다수범죄 처리기준

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
 -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름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를 정함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

-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2.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

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

V. 집행유예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통계분석결과]

■ 상관관계 분석결과

- 증권·금융범죄에 있어서 개별 양형인자와 형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 P : 유의확률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제2항)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28	12.786	7.5883	0.479	0.624
	국선	1	10.000	.		
	없음	3	8.667	1.1547		

*p<0.05, **p<0.01, ***p<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30	11.933	7.2869	-1.159	0.255
	여자	2	18.000	0.0000		
피고인 연령	40세 미만	10	8.800	1.6865	2.246	0.091
	50세 미만	14	16.286	9.4415		
	60세 미만	5	9.200	2.2804		
	70세 미만	2	11.000	1.4142		
	70세 이상	1	10.000	.		
피고인 학력	고등학교	2	8.000	2.8284	0.382	0.686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대학교	26	12.615	7.7927		
	대학원	3	13.333	4.1633		
직업	무직	8	15.750	8.8439	1.292	0.297
	기업 대표이사	8	10.250	1.2817		
	기업체 임원	4	7.500	1.9149		
	회사원	7	12.000	8.2462		
	자영업 (점포업자 등)	2	8.000	2.8284		
	교육직 (교사·강사 등)	1	18.000	.		
	기타	2	19.000	15.5563		
월 수입	없음	4	10.500	1.0000	1.522	0.245
	300만원 이하	4	11.000	4.7610		
	400만원 이하	5	8.800	3.0332		
	500만원 이하	1	10.000	.		
	1,000만원 이하	2	20.000	14.1421		
	1,000만원 초과	4	21.000	14.0949		
피고인 재산 여부	없음	5	10.400	0.8944	-1.524	0.140
	있음	23	13.130	8.3737		
혼인관계	미혼	3	15.333	12.7017	0.434	0.730
	기혼(사실혼 포함)	23	12.609	7.3716		
	이혼	2	10.000	0.0000		
	별거(가출)	1	6.000	.		
부양가족	없음	2	18.000	16.9706	0.497	0.705
	있음	28	12.000	6.7987		
건강상태	양호	30	12.200	7.3597	0.114	0.738
	경증	2	14.000	5.6569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4	9.500	1.0000	1.064	0.318
	보통	14	14.714	9.8795		

*p<0.05, **p<0.01, ***p<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	--	---	----	------	--------	---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18	10.333	2.5896	-1.630	0.125
	해당	14	14.857	10.1288		
동종 전과 여부	없음	28	12.214	7.6272	-0.201	0.842
	있음	4	13.000	3.4641		
이종 전과 여부	없음	15	14.667	9.7882	1.700	0.109
	있음	17	10.235	2.6346		

*p<0.05, **p<0.01, ***p<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유무	아님	14	12.286	6.6034	-0.018	0.986
	해당	18	12.333	7.8291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없음	30	12.400	7.4352	0.262	0.795
	있음	2	11.000	1.4142		

*p<0.05, **p<0.01, ***p<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26	9.846	2.5250	-2.909*	0.032
	공범	6	23.000	11.0091		
공범 내용	전부 자백	16	10.000	2.8284	4.881*	0.015
	일부 자백	12	16.833	9.8519		
	전부 부인	4	8.000	2.3094		
반성 여부	없음	2	8.000	2.8284	-1.989	0.083
	있음	8	17.500	12.2708		

*p<0.05, **p<0.01, ***p<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동기	생활비 마련	비해당	25	9.920	3.1348	-2.614*	0.038
		해당	7	20.857	10.9458		
	사업자금 마련	비해당	26	11.231	5.0621	-1.093	0.321
		해당	6	17.000	12.6965		
	치부	비해당	21	13.143	8.4278	0.898	0.376
		해당	11	10.727	3.8234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29	12.690	7.4311	0.918	0.366	
	해당	3	8.667	3.0551			

*p<0.05, **p<0.01, ***p<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시세 조종	범행방법	통정거래	3	32.000	3.4641	45.729***	0.001
		가장거래	1	12.000	.		
		기타	4	10.000	2.8284		
	거래목적	투자원금 내지 이득약정 후 증자주식 처분	1	12.000	.	0.724	0.554
		M&A관련 공개매수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유지 조작	1	6.000	.		
		기타	4	22.000	12.9615		
미공개 정보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자 지위	기업 대표자	7	10.286	1.3801	6.355**	0.003
		기업 임원	9	9.111	2.2608		
		내부자 가족	2	18.000	0.0000		
		기타	7	10.286	3.9036		
	공시수단 악용	중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허위공시	6	8.667	1.6330	2.416	0.121
		지연공시	1	8.000	.		
기타		12	12.000	3.8139			
일임 매매 제한	주식변동 미신고, 주식대량보유 미신고 (경영권 은폐여부)	없음	1	12.000	.	0.756	0.529
		있음	3	9.333	3.0551		
	주식변동 미신고, 주식대량보유 미신고 (전매차익 발생여부)	발생	0
		미발생	2	11.000	1.4142		

*p<0.05, **p<0.01, ***p<0.001

■ 피해회복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피해회복 노력 여부	없음	19	13.263	8.7486	0.890	0.383
	있음	6	10.000	2.5298		

*p<0.05, **p<0.01, ***p<0.001

②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 제2항)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117	16.479	9.0883	6.634**	0.002
	국선	17	22.706	11.1117		
	없음	15	10.933	7.2454		

*p<0.05, **p<0.01, ***p<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129	14.961	8.8002	-7.501***	0.000
	여자	20	27.400	6.5566		
피고인 연령	30세 미만	1	12.000	.	2.954*	0.022
	40세 미만	33	14.242	7.3102		
	50세 미만	82	16.146	9.4531		
	60세 미만	26	22.000	10.4307		
	70세 미만	7	14.286	10.9805		
피고인 학력	무학	1	42.000	.	4.258**	0.001
	초등학교	5	26.400	8.0498		
	중학교	3	18.000	10.3923		
	고등학교	36	18.278	10.7134		
	대학교	91	15.165	8.1326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대학원	11	12.182	5.5465		
직업	무직	49	18.612	10.4658	2.728**	0.002
	기업 대표이사	14	10.714	3.8914		
	기업체 임원	12	13.000	4.7098		
	회사원	21	13.238	7.8861		
	자영업(점포업자 등)	20	16.700	9.4985		
	교육직(교사·강사 등)	1	10.000	.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15.000	4.2426		
	기타 전문직	2	24.000	8.4853		
	농업·어업·임업·축산업	1	30.000	.		
	주부	7	30.000	0.0000		
	운전사	1	12.000	.		
	일용직(노무종사자)	1	8.000	.		
	종업원	1	12.000	.		
	기타	17	16.941	10.8194		
주거	주거 부정	1	36.000	.	2.081*	0.039
	주거 일정	147	16.408	9.3807		
월 수입	없음	53	19.434	10.2685	1.805	0.093
	100만원 이하	6	16.000	10.9545		
	200만원 이하	14	13.571	8.1591		
	300만원 이하	12	13.000	6.4667		
	400만원 이하	5	16.800	8.8994		
	500만원 이하	12	12.167	6.5204		
	1,000만원 이하	11	14.364	7.5799		
	1,000만원 초과	4	19.500	7.5498		
피고인 재산 여부	없음	40	15.450	9.3807	-0.807	0.421
	있음	98	16.857	9.2658		
혼인관계	미혼	16	12.625	6.0097	1.524	0.211
	기혼(사실혼 포함)	110	16.545	8.8283		
	이혼	14	19.714	13.1233		
	별거(가출)	5	16.800	12.1326		
부양가족	없음	21	13.524	8.7156	-1.555	0.122
	있음	125	16.880	9.2227		
건강상태	양호	122	15.918	8.7174	3.992*	0.048
	경증	24	20.083	12.0791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9	12.000	5.0000	2.724	0.104
	보통	56	18.000	10.6652		
정신병력	없음	147	16.449	9.4269	-2.021*	0.045
	있음	2	30.000	8.4853		

*p<0.05, **p<0.01, ***p<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100	15.000	8.5965	-2.870**	0.005
	해당	49	19.959	10.4920		
동종 전과 여부	없음	129	16.930	9.5592	0.975	0.331
	있음	20	14.700	9.2515		
이종 전과 여부	없음	54	19.852	10.3803	3.041**	0.003
	있음	95	14.800	8.5173		
누범 전과	없음	146	16.616	9.2820	-0.058	0.959
	있음	3	17.333	21.3854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144	16.597	9.3841	-0.231	0.818
	해당	5	17.600	14.2408		

*p<0.05, **p<0.01, ***p<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유무	아님	108	17.704	9.7514	2.429*	0.017
	해당	41	13.805	8.3403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없음	134	16.806	9.7522	0.856	0.402
	있음	15	15.067	7.1661		

*p<0.05, **p<0.01, ***p<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30	10.267	3.8501	-6.962***	0.000
	공범	119	18.235	9.8538		
공범 내용	공동정범 적극가담	116	18.466	9.8664	2.545	0.113
	공동정범 보통가담	3	9.333	3.0551		
자수·자복 여부	없음	128	16.922	9.6356	-1.500	0.136
	있음	5	23.600	13.2212		
자백 여부	전부 자백	79	13.316	7.3442	11.728***	0.000
	일부 자백	39	20.410	10.0962		
	전부 부인	29	20.276	10.4023		
반성 여부	없음	4	12.500	4.1231	-1.788	0.140
	있음	72	16.583	8.3409		

*p<0.05, **p<0.01, ***p<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 동기	생활비 마련	비해당	124	17.919	9.7993	6.509***	0.000
		해당	25	10.240	3.9294		
	채무 변제	비해당	148	16.662	9.5430	0.487	0.627
		해당	1	12.000	.		
	사업자금 마련	비해당	146	16.671	9.5881	0.360	0.719
		해당	3	14.667	5.7735		
	치부	비해당	76	13.658	8.5939	-4.084***	0.000
		해당	73	19.726	9.5004		

*p<0.05, **p<0.01, ***p<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특별한 동기 없음	비해당	141	16.681	9.4923	0.268	0.789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시세 조종	해당	8	15.750	10.6066	3.805**	0.003	
	범행방법	통정거래	37	19.027			9.4472
		가장거래	24	10.333			4.5936
		고가매수	64	18.688			10.2243
		시초가-종가 관여	5	11.200			4.6043
		허위표시	2	15.000			12.7279
		기타	12	15.333			10.0303
	거래목적	투자원금 내지 이득약정 후 증자주식 처분	3	16.000	6.9282	0.741	0.530
		상장시세보다 높은 공모가액 형성	10	17.200	9.6701		
		M&A관련 공개매수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유지 조작	4	10.000	2.8284		
		기타	116	17.379	9.9927		
	일임 매매 제한	주식변동 미신고, 주식대량보유 미신고(경영권 은폐여부)	없음	0	.		
			있음	5	21.200		

*p<0.05, **p<0.01, ***p<0.001

▣ 피해회복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합의 여부	전부 합의	2	9.000	1.4142	1.501	0.223
	미합의	124	17.258	9.4927		
피해자의 처벌의사	전부 처벌 불원	2	9.000	1.4142	-	-
	일부 처벌 불원	0	.	.		
피해회복 노력 여부	없음	124	17.339	9.4558	6.356**	0.008
	있음	2	9.000	1.4142		

*p<0.05, **p<0.01, ***p<0.001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75	18.867	11.8713	2.647	0.077
	국선	8	16.375	11.1347		
	없음	5	6.800	1.7889		

*p<0.05, **p<0.01, ***p<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88	17.955	11.7512	-	-
	여자	0	.	.		
피고인 연령	40세 미만	9	18.444	13.6300	0.023	0.995
	50세 미만	48	17.958	11.4222		
	60세 미만	28	17.964	11.8649		
	70세 미만	3	16.333	17.0978		
피고인 학력	중학교	1	8.000	.	1.265	0.292
	고등학교	21	18.619	12.0933		
	대학교	59	17.085	10.7275		
	대학원	6	25.833	19.4362		
직업	무직	32	18.031	10.8077	0.555	0.790
	기업체 임원	9	14.667	3.7417		
	회사원	32	19.938	14.4444		
	자영업(점포업자 등)	3	12.667	5.0332		
	농업·어업·임업·축산업	2	11.500	9.1924		
	공공기관 임직원	2	17.000	18.3848		
	정당 및 특수단체 임직원	2	25.000	24.0416		
기타	6	14.667	6.4083			
월 수입	없음	23	14.696	8.7876	1.450	0.204
	100만원 이하	1	8.000	.		
	200만원 이하	9	13.111	8.4327		
	300만원 이하	8	20.250	13.3711		
	400만원 이하	6	24.333	16.2686		
	500만원 이하	6	14.333	4.0825		
	1,000만원 이하	10	24.400	16.2972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1,000만원 초과	2	16.000	11.3137		
피고인 재산 여부	없음	11	14.273	8.4391	-1.346	0.182
	있음	69	19.464	12.3056		
혼인관계	미혼	3	11.333	7.0238	0.659	0.580
	기혼(사실혼 포함)	76	18.000	11.8738		
	이혼	7	18.571	13.3023		
	사별	1	30.000	.		
부양가족	없음	7	14.857	12.7466	-0.721	0.473
	있음	80	18.225	11.7817		
건강상태	양호	71	17.423	11.1261	0.751	0.389
	경증	17	20.176	14.2401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5	22.800	7.8230	2.021	0.172
	보통	15	15.733	10.0816		
장애인 유형	불해당	87	18.023	11.8016	0.507	0.613
	해당	1	12.000	.		

*p<0.05, **p<0.01, ***p<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41	19.854	13.3352	1.424	0.158
	해당	47	16.298	10.0259		
동종 전과 여부	없음	86	18.140	11.8204	0.968	0.336
	있음	2	10.000	2.8284		
이종 전과 여부	없음	47	16.298	10.0259	-1.424	0.158
	있음	41	19.854	13.3352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87	18.069	11.7699	0.851	0.397
	해당	1	8.000	.		

*p<0.05, **p<0.01, ***p<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	--	---	----	------	--------	---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유무	아님	67	18.075	11.3596	0.170	0.865
	해당	21	17.571	13.2158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없음	81	17.864	12.0849	-0.244	0.808
	있음	7	19.000	7.3258		

*p<0.05, **p<0.01, ***p<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69	17.522	10.8419	-0.656	0.513
	공범	19	19.526	14.8338		
공범 내용	공동정범 적극가담	18	18.611	14.7015	1.325	0.266
	공동정범 보통가담	1	36.000	.		
자수·자복 여부	없음	74	17.554	11.4499	-2.116*	0.038
	있음	4	30.500	20.2237		
자백 여부	전부 자백	59	17.424	11.1668	0.305	0.738
	일부 자백	8	17.250	11.0421		
	전부 부인	21	19.714	13.8605		
반성 여부	없음	3	25.333	10.0664	1.050	0.299
	있음	49	18.286	11.3284		

*p<0.05, **p<0.01, ***p<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계획	우발적	13	11.923	6.2512	-3.169**	0.003	
	계획적	75	19.000	12.1866			
범행동기	생활비 마련	비해당	60	17.800	12.4571	0.208	0.836
		해당	22	17.182	10.3217		
	유흥비 마련	비해당	80	17.900	11.8883	1.289	0.201
		해당	2	7.000	1.4142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채무변제	비해당	77	17.532	12.0291	-0.303	0.763
		해당	5	19.200	9.8590		
	업무추진비 마련	비해당	74	18.000	12.0183	0.848	0.399
		해당	8	14.250	10.3751		
	경제적 이익 획득	비해당	37	13.757	9.1269	-2.889**	0.005
		해당	45	20.822	12.9567		

*p<0.05, **p<0.01, ***p<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재자 직급	일반 직원		16	18.250	13.1428	0.644	0.632
	부장, 차장, 과장 등 중견간부		46	18.696	12.6436		
	이사 등 임원		15	19.533	10.1056		
	최고경영자		3	10.333	6.8069		
	기타		7	13.714	6.3696		
수재자 담당직무	회사 계약업무		14	14.857	9.1050	0.450	0.772
	회사 자금 관리		14	20.000	11.3409		
	회사 경영		7	15.143	7.8831		
	금융		33	18.242	13.6268		
	기타		17	17.529	10.2842		
직무결정 권한의 정도	업무 보조		13	23.308	15.8923	1.750	0.180
	중간결정권 보유		47	16.638	10.9632		
	최종결정권 보유		21	17.286	9.3656		
범행계기	상급자의 지시		5	11.200	10.8259	1.640	0.200
	다른 공범의 권유, 유혹		8	23.250	11.7565		
	피고인의 단독 판단		73	17.863	11.7996		
범행경위	증재자가 스스로 제공		43	16.721	10.5815	1.241	0.300
	제3자의 중개·알선		1	36.000	.		
	수재자가 묵시적으로 요구		12	16.417	10.5784		
	수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		29	20.138	13.8351		
	기타		2	10.000	0.0000		
재물 등 수수경로	직접 수수		75	18.507	11.7719	0.919	0.457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동료직원을 통하여 수수	1	18.000	.			
	지인을 통하여 수수	3	26.000	12.4900			
	가족을 통하여 수수	2	7.000	1.4142			
	기타	1	10.000	.			
증재자(수재자)관계	금융거래 관계	39	16.513	12.2063	0.872	0.520	
	관리·감독 범위 내 회사	4	19.500	15.8640			
	동료직원	1	30.000	.			
	업무관련 지인	22	20.864	11.1197			
	업무무관 지인	12	15.167	10.3908			
	모르는 사람	7	20.571	11.8161			
	기타	1	5.000	.			
청탁내용	계약 관련	비해당	82	17.854	11.8448	-0.296	0.768
		해당	6	19.333	11.2901		
	대출 관련	비해당	21	18.762	12.0702	0.359	0.720
		해당	67	17.701	11.7306		
	편의제공	비해당	72	18.083	11.7110	0.217	0.829
		해당	16	17.375	12.3011		
	친분 쌓기	비해당	87	18.092	11.7480	1.023	0.309
		해당	1	6.000	.		
	취업	비해당	87	18.103	11.7355	1.110	0.270
		해당	1	5.000	.		

*p<0.05, **p<0.01, ***p<0.001

▣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뢰 후 부정행위 여부	수재로 그침	42	15.690	9.5163	-1.490	0.142
	부정행위로 나감	33	20.030	14.4492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여부	없음	56	17.036	11.9438	-0.730	0.468
	있음	26	19.077	11.4295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유형	자체 반환	1	42.000	.	1.210	0.354
	평가액 반환	7	18.000	12.9615		
	일부 반환	2	21.000	21.2132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시기		수사 개시 전	11	18.000	9.6747	0.499	0.487	
		수사 개시 후	13	21.385	13.1500			
취득한 재물 등 사용처	업무추진	비해당	60	19.100	12.6728	2.900**	0.006	
		해당	15	12.133	6.8125			
	생계비	비해당	39	19.308	14.1703	1.224	0.225	
		해당	36	15.972	9.0538			
	유흥비	비해당	70	18.400	12.1457	5.719***	0.000	
		해당	5	8.000	2.4495			
	채무변제	비해당	62	17.806	12.3206	0.156	0.877	
		해당	13	17.231	10.9708			
	상납	비해당	73	16.959	11.0094	-3.489***	0.001	
		해당	2	45.000	21.2132			
	치부	비해당	58	15.862	10.9391	-2.244*	0.035	
		해당	17	24.000	13.7295			
	본건 관련 징계 처분		파면	6	24.333	21.9241	1.240	0.307
			해임	4	8.500	2.5166		
감봉			3	16.000	12.4900			
없음			34	16.529	11.6000			

*p<0.05, **p<0.01, ***p<0.001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103	11.699	4.7420	8.776***	0.000
	국선	33	8.485	3.1635		
	없음	15	8.667	3.1773		

*p<0.05, **p<0.01, ***p<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137	10.847	4.5920	1.286	0.200
	여자	14	9.214	3.7247		
피고인 연령	30세 미만	2	9.000	4.2426	0.715	0.583
	40세 미만	17	9.529	4.4458		
	50세 미만	67	10.433	3.9050		
	60세 미만	49	11.347	4.8371		
	70세 미만	16	11.250	6.1046		
피고인 학력	초등학교	3	10.667	6.4291	1.152	0.335
	중학교	11	8.364	4.1779		
	고등학교	48	10.375	4.1597		
	대학교	68	11.368	4.7313		
	대학원	10	11.200	5.5936		
직업	무직	30	10.933	5.0030	2.691**	0.002
	기업 대표이사	22	14.864	5.0360		
	기업체 임원	9	8.556	2.4037		
	회사원	32	9.500	3.4454		
	자영업 (점포업자 등)	33	9.727	3.4029		
	교육직 (교사·강사 등)	1	8.000	.		
	기타 전문직	2	9.000	1.4142		
	농업·어업·임업· 축산업	1	8.000	.		
	공공기관 임직원	3	7.333	1.1547		
	기타 공무원	1	12.000	.		
	주부	1	18.000	.		
	운전사	1	10.000	.		
	일용직 (노무종사자)	1	4.000	.		
	종업원	3	12.667	5.0332		
	기타	11	10.909	5.6117		
주거	주거 부정	2	9.000	4.2426	-0.531	0.596
	주거 일정	148	10.723	4.5607		
월 수입	없음	24	10.917	5.2413	0.418	0.889
	100만원 이하	8	8.500	3.3381		
	200만원 이하	29	10.207	4.2205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300만원 이하	21	10.952	4.0801		
	400만원 이하	11	11.455	4.3901		
	500만원 이하	12	10.750	5.2245		
	1,000만원 이하	9	10.444	3.5746		
	1,000만원 초과	4	9.500	3.0000		
피고인 재산 여부	없음	46	10.587	5.0622	-0.163	0.871
	있음	97	10.722	4.3964		
혼인관계	미혼	5	11.200	3.3466	0.579	0.678
	기혼(사실혼 포함)	115	10.948	4.9076		
	이혼	21	9.905	2.8090		
	사별	1	6.000	.		
	별거(가출)	2	9.000	1.4142		
부양가족	없음	11	10.545	2.5442	-0.144	0.886
	있음	137	10.752	4.6916		
건강상태	양호	109	10.330	4.1967	1.307	0.274
	중증	2	11.000	1.4142		
	경증	38	11.711	5.4669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5	15.600	5.3666	4.067	0.052
	보통	31	11.226	4.3720		
장애인 유형	불해당	143	10.734	4.6009	0.445	0.657
	해당	8	10.000	3.2071		
마약복용 경력	없음	150	10.687	4.5468	-0.288	0.774
	있음	1	12.000	.		

*p<0.05, **p<0.01, ***p<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119	10.849	4.7204	0.801	0.424
	해당	32	10.125	3.7653		
동종 전과 여부	없음	132	10.788	4.6463	0.660	0.510
	있음	19	10.053	3.6889		
이종 전과 여부	없음	34	10.029	3.7698	-0.973	0.332
	있음	117	10.889	4.7284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누범 전과	없음	142	10.655	4.5242	-0.434	0.665
	있음	9	11.333	4.8990		
집행유예 중 여부	아님	144	10.792	4.5862	1.186	0.238
	해당	7	8.714	2.7516		

*p<0.05, **p<0.01, ***p<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아님	110	10.027	4.2673	-3.047**	0.003
	해당	41	12.488	4.7860		
제37조 후단 경합범	없음	141	10.787	4.5541	0.935	0.351
	있음	10	9.400	4.2216		

*p<0.05, **p<0.01, ***p<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75	11.400	4.4992	1.914	0.057
	공범	76	10.000	4.4870		
공범 내용	공동정범 적극가담	71	10.141	4.5991	0.525	0.594
	공동정범 보통가담	1	8.000	.		
	공동정범 소극가담	4	8.000	1.6330		
자수·자복 여부	없음	128	11.008	4.6014	0.218	0.828
	있음	1	10.000	.		
자백 여부	전부 자백	102	10.912	4.6631	0.321	0.726
	일부 자백	21	10.143	4.1266		
	전부 부인	27	10.407	4.4915		
반성 여부	없음	6	8.333	1.9664	-1.552	0.125
	있음	72	11.278	4.5909		

*p<0.05, **p<0.01, ***p<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계획		우발적	15	9.267	3.2175	-1.289	0.199
		계획적	136	10.853	4.6373		
범행동기	생활비 마련	비해당	106	10.575	4.5186	-0.645	0.520
		해당	33	11.152	4.3598		
	유흥비 마련	비해당	138	10.732	4.4828	0.607	0.545
		해당	1	8.000	.		
	채무변제	비해당	134	10.515	4.1761	-1.420	0.228
		해당	5	16.000	8.6023		
	업무추진비 마련	비해당	119	10.857	4.4020	0.931	0.353
		해당	20	9.850	4.9019		
	경제적 이익 획득	비해당	40	10.750	4.2892	0.063	0.950
		해당	99	10.697	4.5657		

*p<0.05, **p<0.01, ***p<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재자 직급		일반 직원	6	10.667	4.6762	4.641**	0.002
		부장, 차장, 과장 등 중견간부	8	9.000	2.8284		
		이사 등 임원	10	10.400	5.0596		
		최고경영자	4	19.000	6.6332		
		기타	60	10.350	3.7814		
수재자 담당직무		회사 계약업무	1	12.000	.	0.565	0.689
		회사 자금 관리	1	8.000	.		
		회사 경영	13	12.308	6.8725		
		금융	8	10.250	4.5904		
		기타	56	10.518	3.7658		
직무결정 권한의정도		업무 보조	7	11.143	3.2367	0.058	0.944
		중간결정권 보유	11	10.727	4.2212		
		최종결정권 보유	12	11.500	7.0903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계기	상급자의 지시	1	6.000	.	0.706	0.495	
	다른 공범의 권유, 유혹	37	10.351	4.4361			
	피고인의 단독 판단	110	10.845	4.5518			
범행경위	증재자가 스스로 제공	18	10.500	4.7805	1.249	0.293	
	제3자의 중개·알선	8	13.250	5.3385			
	수재자가 묵시적으로 요구	15	9.200	2.1112			
	수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	102	10.657	4.5304			
	기타	5	12.400	6.5422			
재물 등 수수경로	직접 수수	122	11.049	4.7895	1.119	0.350	
	동료직원을 통하여 수수	4	8.500	2.5166			
	지인을 통하여 수수	8	8.750	2.3755			
	가족을 통하여 수수	6	8.500	3.2094			
	기타	2	10.000	2.8284			
증재자(수재자)관계	금융거래 관계	11	9.545	3.7246	2.811**	0.009	
	관리·감독 범위 내 회사	1	24.000	.			
	동료직원	1	6.000	.			
	친구	1	10.000	.			
	업무관련 지인	29	11.241	4.5486			
	업무무관 지인	48	11.229	4.3965			
	모르는 사람	31	9.613	3.7388			
	기타	10	8.100	2.8460			
청탁 내용	계약 관련	비해당	141	10.426	4.3231	-0.913	0.363
		해당	5	12.200	1.7889		
	대출 관련	비해당	18	11.000	4.7029	0.544	0.587
		해당	128	10.414	4.2213		
	편의제공	비해당	135	10.422	4.1939	-0.634	0.527
		해당	11	11.273	5.2932		
	정보제공	비해당	144	10.535	4.2786	1.164	0.246
		해당	2	7.000	1.4142		

*p<0.05, **p<0.01, ***p<0.001

▣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뢰 후 부정행위 여부	수재로 그침	65	10.508	4.3233	0.072	0.943	
	부정행위로 나감	53	10.453	3.9104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여부	없음	86	10.744	4.2376	0.820	0.414	
	있음	53	10.132	4.3325			
취득한 재물 반환 유형	자체 반환	2	8.000	2.8284	5.392*	0.012	
	평가액 반환	6	7.667	2.3381			
	일부 반환	8	15.500	4.7509			
	기타	1	12.000	.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시기	즉시 반환	2	5.000	1.4142	1.541	0.219	
	수사 개시 전	8	12.000	5.9522			
	수사 개시 후	31	10.355	4.1195			
	기타	2	8.000	0.0000			
취득한 재물 사용처	업무추진	비해당	83	10.494	4.2091	0.011	0.991
		해당	31	10.484	4.6395		
	생계비	비해당	51	10.784	4.0562	0.652	0.516
		해당	63	10.254	4.5222		
	유흥비	비해당	110	10.491	4.3762	-0.004	0.997
		해당	4	10.500	1.9149		
	채무변제	비해당	97	10.258	4.4658	-1.388	0.168
		해당	17	11.824	3.0462		
	상납	비해당	113	10.531	4.3075	1.047	0.297
		해당	1	6.000	.		
	치부	비해당	88	10.489	4.3417	-0.012	0.991
		해당	26	10.500	4.2825		
	본건 관련 징계처분	파면	1	12.000	.	0.259	0.612
		없음	67	9.970	3.9580		

*p<0.05, **p<0.01, ***p<0.001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	---	----	------	--------	---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변호인	사선	20	10.300	4.9535	1.667	0.208
	국선	2	6.000	0.0000		
	없음	8	7.750	1.9821		

*p<0.05, **p<0.01, ***p<0.001

▣ 피고인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성별	남자	28	9.571	4.4341	1.121	0.272
	여자	2	6.000	0.0000		
피고인 연령	40세 미만	3	10.000	6.0000	0.817	0.496
	50세 미만	17	8.706	3.6015		
	60세 미만	6	11.667	6.3770		
	70세 미만	4	8.000	2.8284		
피고인 학력	초등학교	1	10.000	.	0.208	0.931
	중학교	4	11.000	8.7178		
	고등학교	10	9.400	2.9889		
	대학교	11	8.545	3.9080		
	대학원	2	10.000	8.4853		
직업	무직	2	8.000	0.0000	4.616**	0.003
	기업 대표이사	12	8.333	2.8069		
	기업체 임원	1	16.000	.		
	회사원	4	7.000	2.5820		
	자영업 (점포업자 등)	8	9.500	4.1057		
	교육직 (교사·강사 등)	1	6.000	.		
	농업·어업·임업· 축산업	1	24.000	.		
	기타	1	14.000	.		
월 수입	없음	5	8.000	1.4142	0.563	0.754
	100만원 이하	1	10.000	.		
	200만원 이하	1	8.000	.		
	300만원 이하	3	12.667	9.8658		
	400만원 이하	5	7.600	4.7749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500만원 이하	6	10.667	2.4221		
	1,000만원 이하	3	8.000	5.2915		
피고인 재산 여부	없음	6	9.667	7.3121	0.197	0.845
	있음	21	9.238	3.7670		
혼인관계	기혼 (사실혼 포함)	25	9.600	4.6904	0.545	0.587
	사별	1	6.000	.		
	별거(가출)	1	6.000	.		
부양가족	없음	1	6.000	.	-0.750	0.460
	있음	27	9.481	4.5605		
건강상태	양호	22	9.545	4.6160	0.248	0.623
	경증	7	8.571	4.1173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1	4.000	.	2.760	0.195
	보통	4	15.500	6.1914		

*p<0.05, **p<0.01, ***p<0.001

■ 전과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초범 여부	아님	23	8.783	4.2099	-1.263	0.217
	해당	7	11.143	4.7409		
동종 전과 여부	없음	28	9.429	4.4840	0.440	0.663
	있음	2	8.000	2.8284		
이종 전과 여부	없음	7	11.143	4.7409	1.263	0.217
	있음	23	8.783	4.2099		

*p<0.05, **p<0.01, ***p<0.001

■ 경합범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제37조 전단 경합범	아님	24	8.750	3.9480	-1.492	0.147
	해당	6	11.667	5.5737		

*p<0.05, **p<0.01, ***p<0.001

■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공범 여부	단독범	19	9.895	5.3114	1.153	0.260
	공범	11	8.364	1.7477		
자백 여부	전부 자백	17	9.765	4.9438	0.188	0.830
	일부 자백	4	9.000	6.0000		
	전부 부인	9	8.667	2.4495		

*p<0.05, **p<0.01, ***p<0.001

■ 주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범행계획	우발적	1	4.000	.	-1.252	0.221	
	계획적	29	9.517	4.3311			
범행동기	업무추진비 마련	비해당	6	10.667	3.9328	1.330	0.225
		해당	3	7.333	2.3094		
	경제적 이익 획득	비해당	4	8.000	2.3094	-1.146	0.289
		해당	5	10.800	4.3818		

*p<0.05, **p<0.01, ***p<0.001

■ 객관적 인자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재자 직급	일반 직원	3	9.333	1.1547	1.190	0.340
	부장, 차장, 과장 등 중견간부	16	10.750	5.1575		
	이사 등 임원	5	7.200	2.6833		
	최고경영자	2	8.000	5.6569		
	기타	3	6.000	0.0000		
수재자 담당직무	회사 계약업무	5	10.400	5.5498	0.317	0.864
	회사 자금 관리	1	10.000	.		
	회사 경영	3	11.333	5.0332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금융	15	8.533	4.7489			
	기타	5	9.200	3.0332			
직무결정 권한의 정도	중간결정권 보유	15	9.867	3.5024	0.300	0.588	
	최종결정권 보유	13	8.923	5.5145			
범행계기	다른 공범의 권유, 유혹	5	8.000	1.4142	0.675	0.419	
	피고인의 단독 판단	23	9.826	4.8585			
범행경위	증재자가 스스로 제공	18	9.444	5.3930	0.009	0.991	
	수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	8	9.500	2.7775			
	기타	2	9.000	1.4142			
재물 등 수수 경로	직접 수수	25	9.520	4.7357	0.099	0.756	
	기타	1	8.000	.			
증재자(수재자)관계	금융거래 관계	10	11.200	5.8271	0.555	0.733	
	친구	1	10.000	.			
	업무관련 지인	10	8.200	3.1903			
	업무무관 지인	5	8.000	4.4721			
	모르는 사람	2	9.000	1.4142			
	기타	2	9.000	4.2426			
청탁내용	계약 관련	비해당	27	9.333	4.5742	0.000	1.000
		해당	3	9.333	2.3094		
	대출 관련	비해당	4	8.500	5.2599	-0.403	0.690
		해당	26	9.462	4.3288		
	편의제공	비해당	25	8.880	3.4196	-0.765	0.484
		해당	5	11.600	7.7974		
	취업	비해당	29	9.517	4.3311	1.252	0.221
		해당	1	4.000	.		

*p<0.05, **p<0.01, ***p<0.001

▣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월

양형 인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	
수뢰 후 부정행위 여부	수재로 그침	4	9.000	3.4641	0.090	0.932	
	부정행위로 나감	3	8.667	6.4291			
취득한 재물 등 반환 여부	없음	4	9.500	5.5076	0.893	0.438	
	있음	1	4.000	.			
취득한 재물 등 사용처	업무추진	비해당	3	11.333	5.0332	1.262	0.334
		해당	1	4.000	.		
	생계비	비해당	2	5.000	1.4142	-4.025	0.057
		해당	2	14.000	2.8284		

*p<0.05, **p<0.01, ***p<0.001

■ 형량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 증권·금융범죄에 있어서 형량에 대한 양형인자들의 반응정도를 알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해당 사건수가 32건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

②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2	F(p)
(상수)	-4.4393		0.2716	0.742	13.943 (0.000)***
누범 전과	11.0181	0.1936	0.0790		
자수·자복 여부	13.2708	0.4491***	0.0001		
자백 여부	5.5966	0.5504***	0.0000		
반성 여부	11.8688	0.2914**	0.0025		
생활비 마련	-10.4422	-0.3534**	0.0016		
범행기간	1.7877	0.7355***	0.0000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가장거래	-14.2352	-0.5314***	0.0000		

*p<0.05, **p<0.01, ***p<0.001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0.1570		0.9822	0.521	4.739 (0.000)***
이종 전과 여부	5.6273	0.2285*	0.0350		
공범 여부	4.1672	0.1439	0.2264		
자수·자복 여부	14.3604	0.2554*	0.0193		
범행계획	4.6099	0.1456	0.2054		
생활비 마련	6.6871	0.2459	0.0777		
경제적 이익 획득	13.3852	0.5459***	0.0004		
직무결정 권한의 정도	-6.1940	-0.3197**	0.0086		
제3자의 중개·알선	16.4724	0.1721	0.0983		
직접 수수	7.5694	0.1708	0.1970		
지인을 통하여 수수	22.8347	0.3345*	0.0172		
친분 쌓기	-15.1116	-0.1579	0.1500		

*p<0.05, **p<0.01, ***p<0.001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 ²	F(p)
(상수)	17.5044		0.0000	0.408	7.208 (0.000)***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3.5406	0.3821***	0.0000		
공범 여부	-2.2814	-0.2584**	0.0034		
중개자가 스스로 제공	-4.3502	-0.3078*	0.0105		
수재자가 묵시적으로 요구	-3.8033	-0.2691*	0.0116		
수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	-3.7092	-0.4003**	0.0014		
범행 횟수	0.2101	0.2009*	0.0204		

양형인자	B	beta	유의확률	R^2	F(p)
수표	1.8367	0.1598	0.0525		
대출 관련	-4.8264	-0.3273**	0.0010		
정보제공	-8.8336	-0.1983*	0.0231		

*p<0.05, **p<0.01, ***p<0.001

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해당 사건수가 30건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 적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